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제정 2005. 9. 1.)

(전부개정 2015. 8.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의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2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시간”이란 교원이 담당해야 하는 주당 최소 수업시간을 말한다.
2. “초과강의”란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3. “강의시수”란 주당 인정 수업시간수를 말한다.
4. “강의료”란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강의료 및 시간강의료를 말한다.

제4조(책임시간) ① 본교 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책임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또는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책임시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0.9.1.>

② 책임시간은 대학 및 대학원 담당시간을 합산한다.

③ 책임시간에 미달한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간 수업담당 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한 책임시간은 다음 학기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은 책임시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비전임교원 및 강사에 우선하여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④ 전항에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담당부서는 관련 사항을 교원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원 인사부서는 「교원징계규정」 제9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1. 연간 수업담당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2.8.31.>
2. 미달한 책임시간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2.8.31.>
3. 2개 학기 이상 연속하여 [별표 1]의 책임시간에 미달한 경우 <신설 2022.8.31.>

제5조(강의시수) ① 강의시수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6.25.>

② 강의시수는 1학점을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학점을 기준으로 추가 1시간 까지 인정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25., 2021.3.4.>
2. 예체능계열 학과 전공과목의 실기 및 실습 강의, 음악학과의 합창 및 합주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2.20.>
3. 음악관련 학과(전공)의 전공실기 강의는 수강학생 1명당 학부 1,2학년은 2/3시간, 학부 3,4학년과 대학원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대학원은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20., 2020.6.1., 2022.3.1.>
4. 개인(팀)프로젝트 수업은 3학점 1시간, 2학점 0.67시간, 1학점 0.3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3과목 이상인 경우 2과목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9.12.20.>

5. 캡스톤디자인 유형 수업은 7명 이하 1시간, 8~14명 2시간, 15명 이상 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20.>

6. 삭 제 <2022.3.1.>

③ 합반강의는 하나의 강의로 계산한다.

④ 팀티칭강의는 강의시수를 담당 교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진로지도세미나는 분반에 상관없이 1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12.20.>

⑥ 사회봉사활동은 교원당 최대 2개 분반까지 인정한다. <신설 2021.3.4.>

⑦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4조의3에 따라 원격수업의 강의시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다만, 본교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업 담당교원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신설 2022.8.31.>

1. 수업 담당교원이 직접 개발한 강의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1학점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iClass 사전 학습영상은 강의시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상업용 또는 타인이 개발한 강의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1학점을 0.5시간으로 인정한다.

제6조(강의료) ① 강의료는 제4조의 책임시간과 제5조의 강의시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원이 미달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 강의한 시간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시험기간에 시험시간표에 따라 근무한 경우

2.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경우

3. 정규강의 시간 이외에 총장의 위촉에 의하여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지도한 경우

4.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12.20.>

③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며,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시간강의료를 지급하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④ 초과강의료, 시간강의료, 대단위강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20.>

제7조(강의제한) ①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의 3배수 이내(최대 21시간)에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강의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3시간 이내에서 추가 강의를 할 수 있다.

1. 강사 6시간

2. 명예교수 6시간

3. 그 밖의 비전임교원 9시간

③ 총장은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9.12.20.]

제8조(외부출강) ① 타 대학 출강을 희망하는 교원은 개강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출강신청서를 제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교 담당시간과 타 대학 출강시간을 합하여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10.>

② 보직교원은 원칙적으로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

③ 책임시간에 미달한 교원은 미달시간을 보충할 때까지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학칙」 제3조제6항의 출강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강의료 지급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부 칙

3-3-3-6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3.1., 2015.8.26., 2016.6.10., 2017.3.1., 2018.3.1., 2018.3.21., 2018.9.1., 2019.6.25., 2019.12.20., 2020.4.14., 2023.9.1.>

교원 책임시간 기준표

(주당)

구 분		책임시간	학부 담당시간
보직 교원	부총장	0	0
	교무위원, 교수회장, 대학평의원회의장	3	3
	대학본부 부속(설)기관장,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종합연구소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스타워트니스센터장, 교육연수원장, 교직지원부장, 교수회부회장	6	6
	학과장(전공주임, 교육과장), 공과대학 PD, 교수사정관, e-북지관장	8	
정년계열 교원	학부 모집단위 소속(겸직 포함) 교원	9	
	학부 모집단위 외 소속 교원	12	
	HK교수	0	0
비정년계열 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9	계약조건에 따름
	강의중심교수, 학부 모집단위 소속 외국인 교원	12	
	학부 모집단위 외 소속 외국인 교원	16	
외부수탁 사업책임자	5억원 이상/학기	3	3
	3억원 이상/학기	6	6

※ 외부수탁사업 책임자에 대하여는 사업 기간이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되고 교비 대응자금을 제외한 총 사업비 중 해당 학기에 속하는 현금이 기준값 이상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책임시간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3-8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별표 2] <개정 2015.3.1.> <삭제 2015.8.26.>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105.6.18., 2019.12.20.>

연간 수업담당 계획서

대학(원):

학 과:

성명:

위 본인은 년도 학기 수업담당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도 ○ 학 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 점	시간	대학/대학원 수업 표기
	(수업현황 기재)				
책 임 시 간 미 달 사 유					
○○○○학년도 ○ 학 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 점	시간	대학/대학원 수업 표기
	(수업계획)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학(원) 장: (인)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1.10., 2019.12.20.>

타 대학(기관) 출강신청서

대학(원):
학 과:
성 명:

위 본인은 학년도 제 학기에 타 대학(기관)에 출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강 대학(기관)		강의 과목	
출강 학과(부서)		강의 장소	
출강 기간		출강 시간	/ 주
출강 지역		강의료 총액	()천원
담당자/연락처		본교 총 수업시간	/ 주
요청 사유			

붙 임: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인)

학(원) 장: (인)

총장 귀하

결	담당	실 장	처 장	총 장
재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12.20.>

책임시간 감면신청서

대학(원):

학 과:

성 명:

위 본인은 학년도 제 학기에 책임시간 감면(외부수탁과제 과제책임자)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명 및 기간	과제수행금액(백만원)		비고
	총액	해당학기	

첨 부: 과제수행 협약서 ○ 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총장 귀하

결 재	담당	실장	산학협력 부 단 장	산학협력 단 장